



## (사)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 회원님들께,

한국조경학회지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우수등재학술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연구 결과를 한국조경학회지에 투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회 또한 회원님들의 제언을 학회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여기고 이를 학회지 발간에 반영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 제출된 원고의 특정 페이지, 문구, 혹은 문장에 대하여 수정요청 시 표기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저명 국내외 저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줄번호” 방법을 도입하기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1. 한국조경학회지 투고 규정」 5조 3)항 신설

기존	<p><b>5. 제출원고</b></p> <p>1) 원고는 A4용지 1/2장(600자) 내외의 국문초록과 함께 온라인으로 투고한다.</p> <p>2) 투고자는 게재예정 심사결과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원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의 최종원고를 게재확정 논문으로 인정한다. 단, 연구의 특성이나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투고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으나 해소된 후 즉시 최종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p>
개정	<p><b>5. 제출원고</b></p> <p>1) 원고는 A4용지 1/2장(600자) 내외의 국문초록과 함께 온라인으로 투고한다.</p> <p>2) 투고자는 게재예정 심사결과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원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의 최종원고를 게재확정 논문으로 인정한다. 단, 연구의 특성이나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투고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으나 해소된 후 즉시 최종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p> <p><b>3) 원고는 줄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23. 7.1일 시행&gt;</b></p>

2. 투고규정 일부 변경안은 2023년 7월 1일 투고 원고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학회와 학회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 많은 논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경학회 편집위원장 이상우 배상

문의: 한국조경학회 사무국(02-565-2055)